

세무조사 통지부터 불복까지 단계별 대응과 사전 세무진단

회계법인 리파인드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 제안서

작성일 2026. 11. 2.

REFINED
회계법인 리파인드

T. 02-516-3830 | E. admin@refinedacc.com | W. refinedacc.com



01

서비스 개요

조사 시작 20일 전 사전통지부터 불복 90일까지, 단계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검토 결론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 결과통지는 조사 종료 후 20일(일부 사유 40일) 이내입니다(국기법 §81의7①, §81의12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입니다(경정을 미리 알고 낸 경우 제외, §48②1호).

대응 전에 맞춰 두는 항목 4개

1
통지서 대조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를 통지서와 맞춤

2
기한 고정
20일은 시작일·종료일, 30일·90일은 통지받은 날 기준

3
자료 범위
관련 없는 장부는 범위 확인, 관련 자료는 기한 내 제출

4
조사 참여
조사 시작 때부터 회계사가 참여

이런 분께

- ✔ 사전통지서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개인사업자
- ✔ 과세예고통지나 결과통지를 받고 불복 여부를 정해야 하는 분
- ✔ 신고 내용을 조사 전에 점검해 가산세를 줄이려는 대표
- ✔ 상속·증여·법인 거래 뒤 신고 내용의 추징 위험을 점검하려는 분

서비스 범위와 진행 단계

1 통지·진단	사전통지서의 세목, 과세기간, 조사 사유를 확인하고 조사 범위를 정합니다. 통지 전 진단은 신고 내용을 증빙과 대조해 추징 세액을 추정합니다.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과세기간은 수정신고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 이전은 감면 없이 세액 영향만 봅니다.
2 자료·참여	조사기간 안에 낼 자료를 세목과 과세기간 기준으로 정리하고, 현장에 회계사가 참여합니다. 관련 없는 장부 요구는 범위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다만 관련 자료를 늦추면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기한 안에 냅니다. 장부 반출은 동의서와 보관증을 확인합니다.
3 결과 검토	결과통지의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를 신고 내용과 대조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관계 자료를 붙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로 만듭니다.
4 불복	고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경로를 정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02

조사 절차와 기한

추징액은 본세에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세무조사는 통지 한 장으로 시작하지만 기한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 결과통지는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그 절차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도해 1. 세무조사 통지부터 불복까지 기한

사전통지
조사 시작 20일 전

→

조사 진행
수입금액 100억 미만 20일 이내

→

결과통지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고지·불복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일반 과소신고: 본세 + 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본세 1억 원을 과소신고한 채 2년이 지나 고지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1억 원 × 10만분의 22 × 730일 = 1,606만 원이고, 과소신고가산세는 1,000만 원이어서 가산세만 2,606만 원입니다(가정). 1억 원 전액이 부정행위분이면 과소신고가산세는 4,000만 원으로 오르고 부과제척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유형별 세율은 도해 2에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47의3①, §47의4①1호, §26의2①·②2호, 같은 법 시행령 §27의4①

도해 2. 신고 유형별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소득·법인세 등)

납부지연가산세: 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 지정납부기한 후 3%와 월 1만분의 67

신고 유형	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47의3①2호)	5년, 역외거래 7년 (§26의2①)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47의2①2호)	7년, 역외거래 10년 (§26의2②1호)
부정행위 과소신고	부정행위분 40%, 나머지 10% (§47의3①1호)	10년 (§26의2②2호)
부정행위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 60% (§47의2①1호)	10년 (§26의2②2호)
역외 부정행위 과소신고	부정행위분 60% (§47의3①1호가목)	15년 (§26의2②2호)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은 수입금액도 봅니다. 상속·증여세 10년, 부정행위·무신고·거짓신고분은 15년(§26의2④). 부정행위 과소신고는 40% 금액과 1만분의 14 중 큰 금액+10%분(§47의3②1호), 무신고는 20%와 1만분의 7 중 큰 금액(§47의2②1호).



03

실행 전에 확인하는 항목 6개

놓치면 가산세나 기한 도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1 사전통지와 생략 사유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를 적어 보내야 합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이때는 생략 사유를 적은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 개시 때 교부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생략 사유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보이지 않는 사건의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근거: 국기법 §81의7①·⑥, 조심-2025-인-1723(2026.3.24.)

2 연기신청 사유와 통지

천재지변 피해,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대통령령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사유는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장기출장으로 조사가 곤란할 때, 장부 압수·영치,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승인 여부는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됩니다. 연기 사유가 사라지면 5일 전 통지로, 조세채권 확보가 급하면 사유를 적은 통지서 교부로 기간 만료 전에도 조사가 시작됩니다.

근거: 국기법 §81의7②~⑥, 시행령 §63의7①

3 수정신고 시점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기한 뒤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이고 2년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조사 착수를 알고 낸 수정신고와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는 제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가산세 1,000만 원이면 1개월 이내 감면액은 900만 원입니다.

근거: 국기법 §48②1호, 시행령 §29

4 자료 제출과 범위 확대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장부 제출을 요구해야 하고,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출을 늦추거나 거부해 조사 기피가 명백하면 연장 사유가 됩니다(§81의8①1호). 범위 확대는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며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장부는 임의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비정기 조사 사유가 있고 임의 제출 장부를 동의서·보관증으로 일시 보관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반환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돌려줘야 합니다.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14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기법 §81의4③, §81의8①1호, §81의9, §81의10

5 조사기간 연장과 재조사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 기준 100억 원 미만이면 조사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연장은 20일 범위에서 최초에는 관할 세무관서장, 2회째부터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도 연장 사유입니다. 무자료거래, 역외탈세, 명의위장·이중장부 혐의, 부동산 투기 탈루 혐의 조사와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동시조사 등은 이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의 재조사는 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기법 §81의8①~③, §81의4②

6 불복 경로 선택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고지 예정 세액 100만 원 이상 등이 대상입니다. 결정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통지됩니다. 고발·통고처분(관련 없는 세목은 제외),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지 뒤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에서 고릅니다. 청구기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심판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절차 위반이 중대하지 않으면 처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절차 쟁점과 세액 쟁점을 함께 준비합니다.

근거: 국기법 §81의15①~④, §55⑨, §56②③, §61, §66⑥, §68①, 조심-2021-인-1362(2021.6.9.)



04

판정 순서와 일정

단계마다 기한이 있고, 판정은 이 순서로 합니다

도해 3. 통지 이후 법정 기한

사전통지 수령
조사 시작 20일 전. 연기 신청 여부와 제출 자료 범위를 이 기간에 정합니다

조사 진행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은 20일 이내. 연장은 20일 범위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종료 후 20일
결과통지 기한(§11① 사유는 40일).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를 신고 내용과 대조합니다

통지 후 30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 청구하면 결정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통지됩니다

처분 통지 후 90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모두 90일. 이의신청을 거친 뒤에는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도해 4. 단계별 판정 순서

질문	판단
1.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받았으면 통지서의 세목·과세기간·사유를 확인하고 연기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받지 못한 채 조사가 시작됐으면 생략 사유가 통지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사유가 없으면 절차 쟁점이 됩니다.
2.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고, 조사 착수를 알기 전 2년 이내인가요?	맞으면 경과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90%부터 10%까지 감면됩니다(§48②1호). 착수를 알고 냈거나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는 제외됩니다(시행령 §29). 무신고는 기한 후 신고로 6개월 이내에 한해 50%·30%·20%가 별도 적용됩니다(§48②2호).
3.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재조사인가요?	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재조사 금지 위반 쟁점입니다(§81의4②).
4. 결과통지가 신고 내용과 다른가요?	다르면 30일 안에 사실관계 자료를 붙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발·통고처분(관련 없는 세목 제외)이나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이면 청구할 수 없고, 고지 뒤 불복합니다.
5. 고지서를 받았나요?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고릅니다. 심사와 심판은 중복할 수 없고(§55⑨), 소송은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입니다(§56③). 불복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고 집행정지는 긴급성이 인정될 때에 한합니다(§57①).

보수

보수는 대응 단계와 조사 범위를 확인한 뒤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조사 유형,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수, 자료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은 상담 전에 제시하지 않습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과 담당자

문의는 대표번호로 받습니다

Q1.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때는 생략 사유를 적은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 개시 때 받습니다(국기법 §81의7①단서·⑥). 조세심판원은 생략 사유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신고가 있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의 쟁점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조심-2025-인-1723). 다만 비정기 조사 요건이 충족된 사건에서 사전통지 위반이 있더라도 중대하지 않으면 취소하기 어렵다고 본 가정적 판단도 있습니다(조심-2021-인-1362, 당시 기한 15일). 통지서의 사유란은 받은 날 확인합니다.

국기법 §81의7, 조심-2025-인-1723, 조심-2021-인-1362

Q2. 조사 때 회계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납세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기법 §81의5). 조사 시작 때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며 요지를 낭독해야 하고, 조사 사유와 기간,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81의2③). 장부는 임의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비정기 조사 사유가 있을 때 임의로 제출한 장부를 동의서와 일시 보관증을 갖춰 일시 보관하는 경우만 허용되고,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81의10). 참여 여부는 사전통지를 받은 직후 정합니다.

국기법 §81의5, §81의2③, §81의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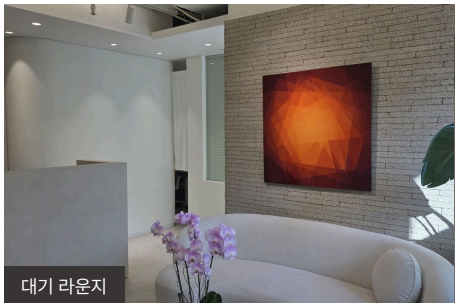
Q3.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어느 쪽부터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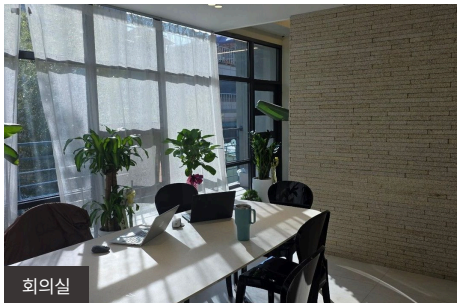
고지 전이면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뒤이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하고(§81의15②), 채택·일부 채택·재조사·불채택·심사하지 않음 중 하나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통지됩니다(④⑤). 청구는 선택이어서 하지 않아도 고지 뒤 불복할 수 있고, 통지 내용에 동의하면 청구 없이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⑥). 이의신청도 선택이며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55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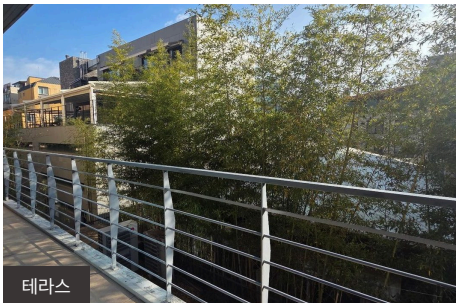
국기법 §81의15, §55③

담당 회계사

이름	직위	전문 분야
이종헌	대표 회계사	가업승계·상속증여, 법인 구조 설계, 세무조사 대응, 기업가치평가
임연희	부대표 회계사	법인 조세 업무, 중소·중견기업 세무 자문
이현우	파트너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세무진단
장하리	이사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자문, 개인 재산제세 업무
김윤경	이사 회계사	K-IFRS·US-GAAP 감사, 투자회계,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검토
박광종	세무사 고문(세무법인 엑스퍼트 소속)	국세청 약 40년 근무, 조사·징세·부가가치세 업무


대기 라운지


회의실


테라스

T. 02-516-3830 | F. 0507-1790-1496 | E. admin@refinedacc.com | W. www.Refinedacc.com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18(크레아빌딩) · 지하철 신사역·논현역에서 각각 도보 5분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세율·기한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